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2회 정례회
‘16. 11. 30. (수)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18

2016.11.3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임회무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2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11월 23일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황규철 위원장)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도 동일한 법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 변경(안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명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조례에 반영함은 물론,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도 동일한 법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여성정책”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4. ----------「양성평등기본법」----------.

관 계 법 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